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8 호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영종구조례 제288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인천광역시영종구조례 제28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인천광역시영종구조례 제29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인천광역시영종구조례 제291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 인천광역시영종구규칙 제62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인천광역시영종구규칙 제6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인천광역시영종구규칙 제6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훈 령

- 인천광역시영종구훈령 제28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인천광역시영종구훈령 제2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인천광역시영종구훈령 제3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고 시

- 인천광역시영종구고시 제2026-1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제2026-17호))
- 인천광역시영종구고시 제2026-18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승인 제2026-08호))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14호 (2026년 8월 지방세(지방소득세) 공시송달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24호 (수용재결 정본 공시송달 공고[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4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영종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부서명 정비 및 사무분장 정비

☐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명칭변경

○ 국(4) : 경제산업국→공항경제국, 주민복지국→주민생활국,

도시안전국→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건설안전교통국

○ 실·과(4) : 홍보체육실→홍보미디어실, 법무감사실→감사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체육과, 차량민원과→대중교통과

나. 국·단 설치에 따른 소속부서 편제 및 소관사무 조정

- 행정국 :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 공항경제국 : 경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

- 주민생활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 도시관리국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288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 감사실”로, “경제산업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교통환경국”을 “공항공제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체육실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법무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3. 개별주택가격평가

제9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공항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항경제국에 경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공항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예술진흥

9. 문화유산 보호·관리

10.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1.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12. 각종 체육진흥 사업

13.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

1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제10조의 제목 “(주민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가족복지과”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도시안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8.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

9.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10.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교통환경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안전교통국에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환경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3. 도로 및 가로등 관리
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5. 안전정책 총괄·조정
6.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7. 산업재해안전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각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무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법무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각각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미래사업추진단, 행정국, 경제산업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교통환경국을 둔다.	제3조(실·단·국의 설치) ----- ----- -- 홍보미디어실, 감사실----- ----- 공항경제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신설>	제4조(기획예산실) ----- -----. 1. ~ 6. (현행과 같음) 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제5조(법무감사실) 법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제6조(감사실) 감사실장-----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홍보체육실) 홍보체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각종 체육진흥 사업 8.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	제5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제8조(행정국) ① ----- ----- 세무1과, 세무2과----- -----.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문화예술진흥
13. 문화유산 보호·관리
14.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5.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1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
전 육성
18. ~ 21. (생략)

제9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
에 경제지원과, 도시농업과, 해
양수산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8. ~ 10. (생략)

11.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2. 개별주택가격평가

<신설>

<신설>

<신설>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3. 개별주택가격평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4. ~ 17. (현행 제18호부터 제2
1호까지와 같음)

제9조(공항경제국) ① 공항경제국
에 경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시농업과, 해양수
산과를 둔다.

② 공항경제국장-----
-----.

1.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예술진흥

9. 문화유산 보호·관리

10.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6. ~ 18. (현행 제8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11.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12. 각종 체육진흥 사업

13.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

1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
전 육성

제10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
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
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제11조(도시안전국) ① 도시안전
국에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안전정책 총괄·조정

6.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7. 산업재해안전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10.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11.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12. 도로 및 가로등 관리

13.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14. · 15. (생 략)

<신 설>

제10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
국-----

----- 가족복지과, 자원
순환과-----.

② 주민생활국장-----
-----.

1. ~ 8. (현행과 같음)

9.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
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
-----.

1. ~ 4. (현행과 같음)

5.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 · 7. (현행 제14호 및 제15호
와 같음)

8.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교통환경국) ① 교통환경
국에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
환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5. (생 략)

6.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7.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

8.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9.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1.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9.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10.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안전교통국) ① 건설
안전교통국에 건설과, 안전관리
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교통국장-----
-----.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3. 도로 및 가로등 관리

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5. 안전정책 총괄·조정

6.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7. 산업재해안전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10. ~ 14. (현행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① (생략)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소장 등) ① -----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② -----

-----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

제16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765명 → 772명 (증 7명)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45명 → 752명 (증 7명)

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별표 1)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조정 전	99.5% 이상	0.5% 이내
조정 후	99% 이상	1% 이내

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별표 2)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조정 전	–	50%	50%	–	–
조정 후	–	34% 이내	50% 이내	16% 이상	–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 3)

–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 762명 → 765명 (증 3명)

– 일반직 6급 이하 : 713명 → 716명 (증 3명)

–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 2명 → 6명 (증 4명)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28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5명이며”를 “772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2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영종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765명</u> 이 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u>745명</u>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u>772명</u> 이며 -----. 1. ----- <u>752명</u> 2. (현행과 같음)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3.5% 이내	34% 이내	31% 이내	3.6% 이상

2.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구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34% 이내	50% 이내	16% 이상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772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계		765	-			
	3급	1	1	-	-	-
	4급	6	5	-	1	-
	5급	42	28	2	6	6
	6급 이하 계	716				
별정직계		6	-			
	6급 상당 이하 계	6	-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조문 정비

☐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변경(제7조)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29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법무감사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홍보체육실”을 “감사실”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주민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경제산업국”을 “공항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안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교통환경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가. ~ 라. (생략) 마. <u>법무감사실</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u>홍보체육실</u>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아. (생략) 자. <u>주민복지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 타. (생략) 2. 도시정책위원회 가. <u>경제산업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도시안전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u>교통환경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생략)	제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홍보미디어실</u> ----- 바. <u>감사실</u> ----- 사.·아. (현행과 같음) 자. <u>주민생활국</u> ----- 차. ~ 타. (현행과 같음) 2. ----- 가. <u>공항경제국</u> ----- 나. <u>도시관리국</u> ----- 다. <u>건설안전교통국</u> ----- 라.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지역 체육의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체육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나. 청소년체육 진흥 사업 추진 근거 신설(제4조의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291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2. “유소년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유소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소년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소년체육 프로그램 지원

2. 유소년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u> <u><신 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u> <u>2. “유소년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유소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u> <u>제4조의2(유소년체육의 진흥)</u> <u>구청장은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유소년체육 프로그램 지원</u> <u>2. 유소년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u> <u>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별 통솔범위·부서명 정비 및 분장사무의 조정

□ 주요내용

가. 국·단장 및 부서장의 직급 규정(제7조~제11조)

나. 구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별표 1)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62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법무감사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재무과장·문화관광과장·평생교육과장”을 “총무과장·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공항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농업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1과장·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

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주민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도시안전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과장·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을 “건설과장·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기획예산실 분장사무 중 제25호를 삭제하고, 제26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하며, 제39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0. 조례·규칙,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4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2. 고시·공고,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43.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 44.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45.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 46. 고문변호사 운영
- 47.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48.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그 분장사무 중 제42호부터 제52호까지를 삭제하며, 제53호를 제42호로 한다.

별표 1의 법무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그 분장사무 중 제15호를 삭제하고, 제1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제18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하고, 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고충민원 업무 처리
- 18. 특이민원 업무 처리
- 19. 갈등민원 조정 업무

별표1의 미래사업추진단 분장사무 중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8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 8. 공약사항 관리
- 14. 시설관리공단 설립전 대행사업 최적화 방안 수립(위탁·용역 타당성 검토 및 총괄계획 수립 등)

별표 1의 경제지원과 분장사무 중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0. 그 밖에 공항경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의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그 분장사무 중 제42호를 삭제하며, 제43호를 제42호로 하고, 제43호부터 제 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3. 각종 체육진흥사업 추진
- 44. 공공체육시설 관리
- 4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46. 신고 체육시설업 처리 및 지도
- 47.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 48. 생활체육회 지원
- 49.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 50. 생활, 건강 체육교실 운영
- 51.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 52.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 53. 수상레저사업 관련 업무

별표 1의 평생교육과 분장사무 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복지정책과 분장사무 중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그 밖에 주민생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의 도시계획과 분장사무 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그 밖에 도시관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의 건설과 분장사무 중 제 5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그 밖에 건설안전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의 교통행정과 분장사무 중 제 3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차량민원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u>법무감사실</u>) (생략)	제5조(<u>감사실</u>) (현행과 같음)
제5조(<u>홍보체육실</u>) (생략)	제4조(<u>홍보미디어실</u>)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총무과장 · 재무과장 · 문화관광과장 · 평생교육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국) ----- ----- <u>총무과장 · 재무과장 · 세무1과장 · 세무2과장</u> ----- ----- ----- -----.
제8조(<u>경제산업국</u>)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으로, <u>도시농업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u> 으로, <u>세무1과장 · 세무2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u>공항경제국</u>) ----- ----- ----- <u>문화관광체육과장 · 평생교육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도시농업과장</u> -----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u> ----- -----.
제9조(<u>주민복지국</u>)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 생활보장과장 · 노인장애인과장 · 가족복지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u> 으로 보한다.	제9조(<u>주민생활국</u>) ----- ----- ----- -----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u> 으로, <u>자원순환과장</u> 은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u> ----- -----.

<신 설>

제10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건설안전교통국) -----

----- 건설과장·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대중교통과장
-----.

<삭 제>

[별표 1]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

실과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1. ~ 24. (생 략) 25. 공약사항 관리 26. ~ 3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홍보체육실	1. ~ 41. (생 략) 42. 각종 체육진흥사업 추진 43. 공공체육시설 관리 4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5. 신고 체육시설업 처리 및 지도 46.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47. 생활체육회 지원 48.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49. 생활, 건강 체육교실 운영 50.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51.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52. 수상레저사업 관련 53. (생 략)
법무감사실	1. ~ 14. (생 략) 15. 고충민원 업무 처리 16. ~ 17. (생 략) 18.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9. 조례·규칙,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20.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1. 고시·공고,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22. 행정법규상당실 운영 23.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2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25. 고문변호사 운영 26.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7.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신 설>
미래사업 추진단	1. ~ 7. (생 략) <신 설> 8. ~ 12. (생 략) <신 설> 13. ~ 14. (생 략)
경제지원과	1.~ 59 .(생 략) 60. 그 밖에 경제산업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

실과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1. ~ 24. (현행과 같음) <삭 제> 25. ~ 38. (현행 제26호~제39호와 같음) 39.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0. 조례·규칙,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4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2. 고시·공고,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43. 행정법규상당실 운영 44.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45.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46. 고문변호사 운영 47.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8.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
홍보미디어실	1. ~ 4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2. (현행 제53호와 같음)
감사실	1.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6. (현행 제16호~제17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7. 고충민원 업무 처리 18. 특이민원 업무 처리 19. 갈등민원 조정 업무
미래사업 추진단	1. ~ 7. (현행과 같음) 8. 공약사항 관리 9. ~ 13. (현행 제8호~제12호와 같음) 14. 시설관리공단 설립전 대행사업 최적화 방안 수립(위탁·용역 타당성 검토 및 총괄계획 수립 등) 15. ~ 16. (현행 제13호~제14호와 같음)
경제지원과	1. ~ 59. (현행과 같음) 60. 그 밖에 공항경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실과명	분 장 사 무	실과명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1. ~ 41. (생 략) 42.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문화관광체육과	1. ~ 41. (현행과 같음) <삭 제> 42. (현행 제43호와 같음) 43. 각종 체육진흥사업 추진 44. 공공체육시설 관리 4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6. 신고 체육시설업 처리 및 지도 47.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48. 생활체육회 지원 49.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50. 생활, 건강 체육교실 운영 51.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52.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53. 수상레저사업 관련 업무
평생교육과	1. ~ 31. (생 략) <신 설>	평생교육과	1. ~ 31. (현행과 같음) 32.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	1.~ 42. (생 략) 43. 그 밖에 주민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복지정책과	1. ~ 42. (현행과 같음) 43. 그 밖에 주민생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도시계획과	1.~ 43. (생 략) 44. 그 밖에 도시안전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도시계획과	1. ~ 43. (현행과 같음) 44. 그 밖에 도시관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건설과	1.~ 57. (생 략) <신 설>	건설과	1.~ 57. (현행과 같음) 58. 그 밖에 건설안전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통행정과	1.~ 32. (생 략) 33. 그 밖에 교통환경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통행정과	1.~ 32. (현행과 같음) <삭 제>
차량민원과	1. ~ 31. (생 략)	대중교통과	1. ~ 31.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변경(별표)

- 총 정원 : 765명 → 772명 (증 7명)

1) 본 청 : 572명 → 582명 (증 10명)

2) 의 회 : 20명 (변동 없음)

3) 보건소 : 60명 (변동 없음)

4) 동 : 113명 → 110명 (감 3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6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단위: 명)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총 계	772	582	20	60	11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65	575	20	60	110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과학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42	28	2	6	6
행정	13	11	2		
의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6급 소계	165	138	4	10	13
행정	61	53	3		5
세무	8	8			
사회복지	5	5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보건	1	1			
시설	10	10			
행정·세무	6	5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7	11			6
행정·공업	2	2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21	21			
행정·방송통신	1	1			
보건·간호	6			6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운전	3	2	1		
사무운영	2	1			1
7급 소계	248	196	8	17	27
행정	97	73	7		17
세무	14	14			
전산	4	4			
사회복지	24	14			10
공업	4	4			
농업	1	1			
녹지	4	4			
해양수산	2	2			
보건	2	1		1	
간호	3			3	
보건진료	1			1	
환경	4	4			
시설	24	24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9	9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9	9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2	2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2	2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보건 · 의료기술	2			2	
보건 · 간호	5			5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4			4	
운전	9	8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1		1		
8급 소계	227	158	4	21	44
행정	91	68	4		19
세무	6	6			
전산	2	2			
사회복지	25	12			13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6	3		3	
의료기술	1			1	
간호	14	1		7	6
환경	4	4			
시설	15	1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행정 · 세무	1	1			
행정 · 전산	1	1			
행정 · 사회복지	15	9			6
행정 · 공업	2	2			
행정 · 녹지	1	1			
행정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2	2			
행정 · 환경	3	3			
행정 · 시설	4	4			
행정 · 방재안전	2	2			
전산 · 세무	1	1			
공업 · 시설	1	1			
녹지 · 시설	1	1			
보건 · 간호	6			6	
간호 · 보건진료	1			1	
시설 · 방재안전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운전	4	3		1	
9급 소계	76	49	2	5	20
행정	29	16			13
세무	3	3			
사회복지	9	4			5
숙기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3			3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운전	1				1
별정직 계	6	6			
별정6급상당 계	2	2			
별정(비서요원)	1	1			
행정·별정(비서요원)	1	1			
별정7급상당 계	3	3			
별정(비서요원)	1	1			
행정·별정(비서요원)	2	2			
별정8급상당 계	1	1			
별정(비서요원)	1	1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부서별 사무조정에 따른 전결처리사항 정비

☐ 주요내용

가. 구 본청의 사무전결사항 개정 (별표 1)

- 부서명 변경 및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6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획예산실의 단위사무 중 제31호를 삭제하고, 제32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하며, 제42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획 예산실	42.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기안			○	
	43. 법제자료 조사	기안		○			
	44.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및 공포						
	가. 조례(안) 의결사항 및 규칙 사전보고	기안		○			
	나. 조례·규칙·훈령·예규 심사	기안		○			
	다. 입법예고(안) 심사	기안		○			
	라. 조례·규칙·훈령·예규 제·개정 및 폐지 공포	기안					○

45.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기안					○
	나. 결과보고	기안					○
46.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법무 관계자료 편찬	기안		○			
47.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기안	○			
48.	대한민국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관리 및 확인	기안		○			
49.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기안		○			
50.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가. 제소·피소						
	(1) 민사(가합 : 주요사건)	기안				○	
	(2) 민사(가단, 가합, 가소)	기안		○			
	(3) 행정	기안		○			
	나. 소송위임	기안		○			
	다.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라. 소송사건 자료수집	기안	○				
	마.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기안		○			
	바. 패소사건 응소 및 종결						
	(1) 민사(가합 : 주요사건)	기안				○	
	(2) 민사(가단, 가합, 가소)	기안		○			
	(3) 행정	기안		○			
	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제출	기안		○			
	아. 반소의 결정	기안				○	
	자. 신청사건처리 및 보고	기안		○			
	차. 소송진행사항 보고	기안		○			
51.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청구 접수	기안		○			
	나. 행정심판 수행자 지정	기안		○			
	다.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기안		○			
	라. 협의, 의견조화, 자료수집	기안	○				
52.	법률 고문변호사 운영	기안					○
53.	납세자보호관 운영						
	가.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기안		○			
	다.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기안		○			
	라.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기안					○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기안		○			
	바. 기한의 연장, 가산세감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안		○			

별표 1 “법무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그 단위사무 중 제22호부터 제33호
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그 단위사무 중 제46호부터 제 51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 미래사업추진단의 단위사무 중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미래사업 추진단	9. 구청장 공약사항						
	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관리	기안		○			
	나.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결과보고	기안					○
	10. 시설관리공단 설립전 대행사업 최적화 방안 수립						
	가. 중요 결정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별표1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그 단위사무 중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문화관광 체육과	22.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안	○			
	나. 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수립	기안		○			
	다. 생활체육 진흥 각종 생활체육 대회	기안		○			
	라. 생활체육 진흥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안		○			
	마. 중요한 사항		기안			○	
	바. 경미한 사항	기안	○				
	23. 생활체육 관련사항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민간단체)	기안		○			

	다. 관련단체 운영 및 관리 (정액단체)	기안		○			
	라.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도 관리	기안		○			
24.	체육시설에 관한사항						
	가. 체육시설업 신고	기안		○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기안		○			
	다. 행정처분	기안		○			
	라. 지도 관리	기안		○			
25.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사항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기안		○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사항 등록	기안		○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	기안		○			
	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발급	기안	○				
	마. 동력수상레저기구 압류등록	기안		○			
	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기안	○				
	사.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기안		○			
26.	건전생활 관련시설						
	가. 관련시설 개발 및 설치	기안		○			
	나. 관리 및 지도	기안		○			
27.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별표1 평생교육과의 단위사무 중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평생 교육과	24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
	가. 구립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기안					
	나.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별표1 “차량민원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훈령(발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사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주요내용

가. 구 본청에 두는 실·과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별표 1)

- 1) 기획예산실 (17 → 19) : 행정·세무6(1), 행정7(1)
- 2) 홍보미디어실 (23 → 21) : 행정6(1), 행정7(△1), 행정8(△2)
(구 홍보체육실)
- 3) 감 사 실 (13 → 12) : 행정·세무6(△1)
(구 법무감사실)
- 4) 총 무 과 (34 → 38) : 행정·별정6(1), 행정·별정7(2), 별정8(1)
- 5) 문화관광체육과 (27 → 24) : 행정7(1), 행정6(△1), 행정8(△3)
(구 문화관광과)
- 6) 평생교육과 (15 → 23) : 행정6(1), 행정7(1), 행정8(6)
- 7) 도시농업과 (15 → 17) : 행정6(1), 행정·농업9(1)
- 8) 건 설 과 (32 → 33) : 행정·과학기술4(1)
- 9) 교통행정과 (17 → 16) : 행정·과학기술4(△1)

나.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별표 4)

- 1) 영종 1동 (22 → 21) : 행정7(△1)
- 2) 운서 1동 (19 → 18) : 행정8(△1)
- 3) 운서 2동 (19 → 18) : 행정8(△1)

다. 부서별 직렬·직급 변경 내역 (별표 1)

- 1) 감 사 실 : 행정8(1) → 행정7(1)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훈령 제28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단위: 명)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582	
기획예산실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행정·세무1
		7급	8	행정7, 행정·전산1
홍보 미디어실	계		21	
	일반직	소 계	21	
		5급	1	행정·방송통신1
		6급	5	행정3, 행정·전산1, 행정·방송통신1
		7급	9	행정3, 전산3, 방송통신1, 행정·방송통신1, 통신운영1
감사실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행정·시설1
		7급	5	행정5
미래사업 추진단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6	행정5, 시설1
총무과	계		38	
	정무직	소 계	1	
	일반직	소 계	31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6급	6	행정6
		7급	7	행정6, 운전1
		8급	13	행정12, 운전1
		9급	1	행정1
	별정직	소 계	6	
		6급	2	별정1, 행정·별정1
		7급	3	별정1, 행정·별정2
		8급	1	별정1
재무과	계		29	
	일반직	소 계	29	
		5급	1	행정1
		6급	7	행정3, 행정·세무1, 행정·공업1, 시설1, 운전1
		7급	10	행정4, 행정·세무1, 행정·시설1, 전산1, 시설1, 운전2
		8급	10	행정5, 행정·공업1, 세무1, 시설1, 운전2
		9급	1	행정1
세무1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1
		6급	5	세무4, 행정·세무1
		7급	8	세무8
		8급	3	세무2, 전산·세무1
		9급	2	세무2
	세무2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1
		6급	5	세무4, 행정·세무1
		7급	7	세무6, 행정·세무1
		8급	2	세무2
		9급	1	세무1
민원지적과	계		30	
	일반직	소 계	30	
		5급	1	행정·시설1
		6급	7	행정2, 행정·시설4, 시설1
		7급	13	행정5, 행정·시설1, 시설6, 운전1
		8급	7	행정5, 시설2
		9급	2	행정2
경제지원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공업1
		6급	5	행정4, 행정·공업1
		7급	8	행정5, 행정·공업1, 공업2
		8급	6	행정4, 행정·공업1, 공업1
		9급	1	행정1
문화관광 체육과	계		24	
	일반직	소 계	2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9	행정8, 행정·시설1
		8급	8	행정5, 행정·공업·시설1, 시설2
		9급	2	행정2
평생교육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3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5, 행정·사회복지1
		8급	9	행정9
		9급	1	행정·사회복지1
도시농업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농업1
		6급	4	행정1, 행정·농업2, 농업1
		7급	5	농업1, 행정·농업1, 농업·수의1, 운전2
		8급	4	행정1, 농업3
		9급	3	행정·농업1, 농업1, 행정·농업·복지1
해양수산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해양수산·시설1
		6급	3	행정·해양수산1, 행정·시설2
		7급	4	해양수산2, 행정·해양수산1, 행정·시설1
		8급	6	행정1, 해양수산1, 시설1, 행정·해양수산1, 행정·시설2
		9급	1	해양수산1
복지정책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4급	1	서기관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8급	4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간호1
		9급	3	사회복지3
생활보장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급	7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2
		8급	10	행정1, 사회복지7, 행정·사회복지2
		9급	1	행정1
노인장애인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7급	6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8급	5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사회복지3
가족복지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급	7	행정1, 사회복지4, 행정·사회복지2
		8급	8	행정4, 행정·사회복지4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자원순환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환경1
		6급	6	행정1, 행정·환경3, 행정·시설1, 운전1
		7급	5	행정1, 환경1, 행정·환경2, 운전1
		8급	4	환경2, 행정·환경2
		9급	2	환경1, 행정·환경1
도시계획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6	
		4급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시설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6급	4	행정·시설4
		7급	6	행정1, 시설3, 행정·시설2
		8급	3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9급	1	시설1
공원녹지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5	행정·시설1, 행정·녹지2, 녹지2
		7급	5	행정1, 녹지3, 녹지·시설1
		8급	4	행정·녹지1, 녹지2, 녹지·시설1
		9급	4	행정·녹지2, 녹지2
건축과	계		28	
	일반직	소 계	28	
		5급	1	행정·시설1
		6급	7	시설5, 행정·시설2
		7급	12	행정1, 시설7, 녹지1, 행정·시설1, 행정·농업1, 건축운영1
		8급	5	행정·시설·방재안전1, 사회복지1, 시설3
		9급	3	시설3
환경위생과	계		28	
	일반직	소 계	28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5	보건1, 행정·보건2, 행정·환경2
		7급	9	행정1, 보건1, 환경3, 행정·보건1, 행정·환경2, 행정·보건·환경1
		8급	9	행정·보건2, 행정·환경1, 행정·세무1, 보건3, 환경2
		9급	4	행정1, 보건2, 행정·보건1
건설과	계		33	
	일반직	소 계	33	
		4급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시설1
		6급	8	행정1, 행정·시설3, 공업1, 시설3
		7급	13	행정2, 공업2, 시설6, 녹지·시설1, 전기운영1, 운전1
		8급	6	행정1, 시설4, 공업·시설1
		9급	4	행정1, 행정·시설·방재안전1, 시설2
안전관리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3	
		5급	1	행정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6급	5	행정4, 행정·공업·방재안전1
		7급	5	행정2, 행정·보건·환경1, 행정·시설·방재안전2
		8급	11	행정4, 방재안전1, 방송통신1, 행정·방재안전2, 행정·시설1, 행정·시설·방재안전2
		9급	1	행정·방재안전1
교통행정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2, 행정·세무1,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5	행정2, 행정·세무1, 행정·시설2
		8급	3	행정1, 세무1, 시설·방재안전1
		9급	2	행정2
대중교통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5	행정5
		8급	5	행정5
		9급	3	행정3

[별표 4]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단위:명)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110	
영 종 동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8	행정3, 사회복지3, 간호1, 행정·사회복지1
		9급	4	행정3, 사회복지1
영종1동	계		21	
	일반직	소 계	2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10	행정5, 사회복지3, 간호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영종2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7	행정3, 사회복지2, 간호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운서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2, 사회복지2, 간호1, 행정·사회복지1
		9급	4	행정3, 사회복지1
운서2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7	행정3, 사회복지2, 간호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용 유 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사무운영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6	행정3, 사회복지1, 간호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운전1

인천광역시 영종구 훈령(발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사유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 주요내용

가. 고용부서 명칭 변경 (안 별표)

- 홍보체육실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훈령 제2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원근로자의 정수표

(단위:명)

부서별 직종별		계	구 본 청												소속기관		
			홍보 미디어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 지적과	복지 정책과	생활 보장과 장애인	노인 장애편과	자원 순환과	도시 계획과	공원 녹지과	건설과	교통 행정과	보건 행정과	건강 증진과	건강 돌봄과
총 계		82	2	7	1	3	4	2	1	35	1	5	6	2	8	2	3
행정 보조 원	소 계	20	1		1	3	4	2					2	2	5		
	구호제 보조작 정물원	1	1														
	회사보 조원	1			1												
	민사무 원원	1				1											
	행자관 료리 정실원	1				1											
	지조 적사 재원	1				1											
	통사관 리 합례사	5					4	1									
	의급관 리 료여사	1						1									
	G I S B D 갱신 원	1											1				
	도굴감 리 로차원	1											1				
	주과관 정태 차료원	2												2			
	보사보 조 건업원	5													5		
단 순 노 무 원	소 계	18	1						1		1	5	4		1	2	3
	시관 설리 물원	8	1						1			5			1		
	현장지 단속 도원	1									1						
	물치 료사	1															1
	방건관 리 문강사	2															2
	건사보 조 강업원	2														2	
	도보수 로원	4											4				
청경 원찰		9		7											2		
환경 무 경관		35								35							

인천광역시 영종구 훈령(발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 제정사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통하여 영종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정책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문 기능(제2조)

- 1)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2) 주요 정책사업 기획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3)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방향제시 및 새로운 정책 제안
- 4) 구의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5)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나. 위촉 및 임기(제3조)

- 1) 15명 이내로 위촉
-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다. 활동 지원(제5조)

- 자문에 응하는 자문관에게 수당, 여비, 자문료 지급 가능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훈령 제3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주요 정책의 방향 제시,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과 그 밖에 구정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사업 기획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방향제시 및 새로운 정책 제안
4. 구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의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조 각 호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자문관의 사의에 의한 경우

제5조(활동 지원) ① 회의 참석, 서면 제출, 자문 활동 등으로 자문에 응하는 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수당, 여비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자문료는 1일 최대 4시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자문관으로부터 제2조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 금지) 자문관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의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내역

허가 번호	허가일	위 치	면적	목 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 간	
						당초	변경
제2026 - 17호	2026. 8. 3.	인천광역시 영종구 남북동 928-22번지 인근 공유수면	210㎡	갯벌체험장 대기·휴식 및 야외교육장 운영	남북어촌계장 신현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남북로 87번길 13-1)	2025. 8. 6. ~ 2026. 8. 5.	2026. 8. 6. ~ 2027. 8. 5.

2026년 8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내역

승인 번호	승인일	공사 내용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일
제2026-08호	2026. 8. 4.	인천국제공항 신불IC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2차 시추조사	(주)케이씨티엔지니어링 대표 최태욱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606호)	2026. 8. 5. ~ 2026. 8. 14.

2026년 8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백*기외 23인
- 서류의 송달지: 인천광역시 영종구 논골3길
- 서류의 명칭: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 서류의 내용: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위의 서류를 2026년 7월 13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하지 못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시행하는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중산동 1850-398번지 ~ 1165-6번지 일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6. 26.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사 업 명: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850-398번지 ~ 1165-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건설과(☎032-760-7854)
(주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8층)
5. 공시송달 대상: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폐문부재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8. 10. ~ 8. 24. (14일 이상, 초일 불산입)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오*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89-45	
2	이*찬	인천광역시 영종구 마장포로 84-26 (중산동)	
3	오*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48번길 55-18, 2동 B01호 (주안동, 가든빌라)	
4	오*운	경기도 파주시 송학1길 62-20, 105동 202호 (야당동, 벨라타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3. 공고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반송 사유
1	김*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수로732번길 10-*,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폐문부재
2	장*영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229, 101동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폐문부재
3	(주)골*파*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빛로70,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폐문부재
4	카* (CA***LK)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30, ***호(구월동)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6. 8. 10.(월) ~ 2026. 8. 27.(월) (17일간)

5. 공고사항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자원순환과(☎032-760-7406, FAX.032-760-781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청 자원순환과 생활청소팀(☎032-760-7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